

광명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제정	2013. 10. 8	조례	제1956호
일부개정	2014. 3. 7	조례	제1999호
일부개정	2016. 9. 26	조례	제2195호(인용조항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)
일부개정	2018. 7. 31	조례	제2372호(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)
일부개정	2020. 6. 19	조례	제2639호
일부개정	2023. 11. 10	조례	제3015호(만 나이 정착을 위한 「광명시 신중년층 인생 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」 등 24개 조례 일부 개정을 위한 조례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예우 및 복지증진을 위해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6. 9. 26>

1. “보훈회관”이라 함은 광명시 거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공훈에 보답하고 예우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.
2. “부속시설”이라 함은 보훈회관 내에 설치된 보훈단체 사무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을 말한다.
3. “저소득소외계층”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서 정한 수급자와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차상위계층을 말한다.

[전문개정 2014. 3. 7]

제3조(위치) 보훈회관은 광명시 연서일로17번길 26에 둔다.

제3조의2(업무) 보훈회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보훈단체 육성발전에 관한 사업
2. 보훈회원의 자활능력배양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
3.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[본조신설 2020. 6. 19]

제4조(시설) 보훈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.

1. 사무실

- 2. 회의실
- 3. 목욕탕
- 4. 식당
- 5. 기타 보훈회원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설

제5조(운영 및 관리) 광명시장은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운영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및 보훈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14. 3. 7>

제6조(계약 또는 협약) 시장은 시설에 대한 책임, 계약보증, 기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계약 또는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.

제7조(운영기간) 운영기간은 계약 또는 협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제8조(시설물의 이용대상) 보훈회관 또는 부속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와 같다. <개정 2014. 3. 7, 2023. 11. 10>

- 1. 광명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. 다만, 목욕시설은 65세 이상 저소득소외계층 중 동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.
- 2.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또는 운영자의 승인을 받은 사람

제8조의2(사용료 등) ① 시장은 보훈회관 또는 부속시설 이용자로부터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징수기준은 「별표」와 같다.

[본조신설 2014. 3. 7]

제9조(지원)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회관의 운영·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8. 7. 31>

제10조(지도감독)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훈회관 운영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지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시정 및 지적사항 등의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 지도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.

제11조(운영자의 의무) ① 운영자는 지역사회발전 및 보훈회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.

- ② 운영자는 보훈회관 운영으로 얻은 수익금은 보훈회관의 관리·운영비에 충당하여야 한다.
- ③ 운영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시설의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관리책임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- ④ 운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,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12조(양도금지) 운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훈회관을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.

제13조(원상복구) 운영자는 계약의 해제, 종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.

제14조(운영권리의 해제) 시장은 운영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계약 또는 협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, 이로 인한 운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 다만, 공유재산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에서 일방적으로 해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운영자가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,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
2. 운영자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
3.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때

제15조(손해배상) 운영자는 관리책임자로서의 의무와 주의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제반손해에 대하여는 변상책임을 진다.

제16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「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, 「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17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4. 3. 7 조례 제1999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광명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부칙 <2016. 9. 26 조례 제2195호, 인용조항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
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8. 7. 31 조례 제2372호, 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부칙 <2020. 6. 19 조례 제2639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3. 11. 10 조례 제3015호, 만 나이 정착을 위한 「광명
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」 등 24개 조례
일부개정을 위한 조례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 <개정 2023. 11. 10>

보훈회관 부속시설 사용료 (제8조의2 제2항 관련)

시설명	기준	사 용 료		비고
		국가유공자 및 유족	65세 이상 저소득소외계층 중 동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	
목욕탕	1회	무료	2,000원 이하 (보호자 3,000원 이하)	